

光州直轄市西區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 年 5 月

總 務 委 員 會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2年 3月 19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2年 5月 11日

라. 上程日字 : 第15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 (92. 5. 15) 上程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答辯

第2次 總務委員會 (92. 5. 16) 議決

2. 提案說明的 要旨

(提案說明者 : 西區 總務局 會計課長)

가. 提案理由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및 운영사항을 재정비하여보다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코자함.

#### 나. 主要 骨 子

○ 현행 : 위원정수 3인중1인은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

○ 개정 : 위원정수 3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임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자로 할수있다. (조례안 제 2. 3조)

○ 지방의회에서 위원위촉시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함. (조례안 제3조)

○ 위원 일비 지급액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李元昌)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

세출 결산의 제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결산검사사항)를 근거 법규로한 개정조례로

○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였으나

○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습

○ 그간에 90년도의 결산검사와 91년도에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92년도 예산심의 확정등으로 의원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인정하고

-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이 확정되게 함은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제도로 권한을 지방의회에 일임한 개정내용임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 4. 質疑答辯要旨 :
- 5. 討論要旨 :
- 6. 審査結果 : 별첨 조례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
- 7. 少數意見의 要旨 :
- 8. 其他事項 :

##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원의정수)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및절차)①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p> <p>④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의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⑤ (생략)</p> <p>&lt;별표 제2호&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 생략 "</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20,000 원	여비	" 생략 "	<p>제2조(위원의정수)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및절차)①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p> <p>(삭제)</p> <p>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p> <p>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lt;별표 제2호&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 현행과같음 "</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30,000 원	여비	" 현행과같음 "
구분	액 수												
일비	20,000 원												
여비	" 생략 "												
구분	액 수												
일비	30,000 원												
여비	" 현행과같음 "												